

(報 告)

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

의안 번호	00K/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0월 14/ 일

발 의 자 : 윤광열의원 외 14 인

1. 제안이유

성남시의회 포상규정중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보강하고 위원회 회의소집과 회의록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보강(안 제11조제2항)
 - 각 상임위원회 위원 4인이내
- 제1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 - 제11조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

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및 전문위원 1인”을 “각 상임
위원회 위원 4인 이내”로 한다

제11조 제3항을 제11조 제4항으로 한다.

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
작성하여 보관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의회공적심사위원회) ①(생략)	제11조(의회공적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<u>의회운영위원회 위원1인 및 전문위원 1인으로</u>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의정담당주사가 된다(신설)	② ----- ----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4인 이내로 ----- -----
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	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----- -----